

의안번호	2218996
의 퇴 인	양부남의원
회 답 일	2026.8.21.
추계번호	26D2642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의7제1항(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) 신설	기관장은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,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6조의7제1항(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긴급조치(안 제46조의7제1항 신설)

- 개정안은 기관장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 중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개정안이 개정하려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」(법률 제21417호, 2026년 2월 27일 공포, 제46조의6은 2027년 2월 28일 시행)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에

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(제46조의6제3항), 이는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한정됨

- 개정안은 요양급여 청구 및 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위험군을 식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통보를 거쳐 기관장의 조치로 연결되는 별도의 경로를 신설하고, 지원 내용에 심리상담을 넘어 상담치료를 포함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되는 경우에도 상담·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개정안이 긴급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치의 절차와 범위,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, 1인당 평균 상담·치료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현행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, 재활급여 등 재해보상급여는 2025년 기준 233,638건에 대하여 총 1,754억 6,900만원 지급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